

「2021/22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(EIPP)」
인도네시아 신수도 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
대중교통 도입 기본구상

과 업 지 시 서

2021. 11.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

목 차

I. 과업지시서.....	1
1. 개요.....	1
2. 과업기간.....	3
3. 과업내용.....	4
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	6
5. 과업수행 방법.....	9
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	10
7. 보안대책.....	13

I. 과업지시서

1. 개 요

□ 과업명 : 「2021/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(EIPP)」 인도네시아 신수도 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 대중교통 도입 기본구상

□ 과업배경

○ 수도이전 개관

- 자카르타와 자바섬의 인구집중 및 경제력 편중이 심화되고 심각한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, 물 문제, 기반침하 등 도시문제 대두

*자카르타 수도권에 3천만 명 밀집, 전체인구의 57%가 자바섬 거주

- 정부기관이 자카르타와 보고르에 분산되어 있어 공공행정 효율성이 저하

- 이에, 인니정부는 자바섬 밖 동부 칼리만탄섬(Kutai Kartanegara군, 北 Penajam Paser군)에 전략적 수도이전을 시행하여 불평등, 불균형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인니만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를 건설코자 계획하고 있음



○ 제약요인

- 인니 정부는 전략적인 수도 이전을 통해 자카르타의 만성적인 문제인 극심한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을 비롯한 종합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솔루션을 마련하고자 함. 이에 신수도 지역의 녹색 선진교통체계 및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여, 스마트 녹색교통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하지만, 기존 수도 지역조차 보행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량하여 오토바이-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, 선진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춘 해외 정부의 경험 공유 및 기술 협력을 통한 신규 교통 인프라 도입 연구가 필요함.
- 또한, 수도이전 사업에 막대한 자원(약 40조 추정)의 투입이 예정되어 있으며, 그 중 80% 이상을 민간에서 조달하고자 함. 특히, 막대한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교통 인프라 특성상 민간 부문의 자원조달이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선결 과제임.

○ 협력국 정책 부합성

- 인니 정부는 신수도 지역에서 친환경·IT 기반 선진 교통체계 도입 등의 교통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교통 정체와 대기오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, 실시간 지능형교통체계(ITS) 구축 및 경량궤도교통(LRT), 간선급행버스체계(BRT), 전기차(EV) 인프라, 자율주행,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계획하고 있음.
- 또한, 국가가 주도하여 고수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‘메이킹 인도네시아 4.0’ 로드맵 등의 실현을 위해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함. 특히,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, 코발트 등 풍부한 매장량을 활용하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 등을 위하여 EV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○ 국내 정책 부합성

- 한-인니간 교통협력은 APEC 교통실무그룹 회의, ASEAN 협력 포럼 등을 통하여 교통 인프라 개선, 교통망 연계 강화, 안전 강화 방안, 지속가능한 교통 등의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해왔음.
- 특히, 2017년 11월 ‘한-인니 교통·인프라 협력 양해각서(MOU)’ 체결 이후 자카르타 지역의 ITS, LTR 구축 관련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, 인니 교통부

장관이 발리 경전철과 자카르타 지하철 1호선 4공구 건설 공사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양국 기관 간 교통 분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.

- 또한, 2020년 12월, 한-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이 정식 서명되었으며, 2021년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. 국내 기업의 민간투자부문에서는 현대차의 첫 동남아시아 완성차 생산기지가 완공되어 첫 생산에 들어갔으며, 2021년 7월 29일 ‘현대차·LG에너지솔루션·인니 정부가 배터리셀 합작 공장’에 대한 투자협약이 체결되는 등 대규모 민간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음.

○ 사업 필요성

- 인니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부문에 선제적 투자를 통하여, 스마트 녹색교통 인프라의 경제적 효과를 다른 부문으로 확산시키고자 함.
- 따라서, 인니 정부는 ITS 기반의 LRT, BRT 등 대중교통 체계와 전기차(EV) 인프라,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종합 컨설팅을 요청하였음.

※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인니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과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반영하여야 함

※ 과업수행자는 기획재정부의 2020/2021 인니 EIPP(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), 인니 K-City Network를 통해 수행될 신수도 건설관련 타 정책자문과 기타 인니정부의 MP, 도시설계 내용을 반영하고 연계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

※ 과업수행자는 인니 정부 및 현지기관,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여야 하고, 필요시 사안별로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 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(e.g. 현지 시장조사 등은 현지 리서치 및 마케팅 수행경험이 있는 글로벌 서비스(자문) 회사에서 시행)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300일

3. 과업내용

[공동연구] 협력 대상국의 주제에 대해 한국 경험을 토대로 교통 계획 및 수립 체계 마련

- 신수도 지능형교통체계 기존계획 리뷰 및 정책제언
 - 신수도 교통체계 관련 기존 계획 리뷰: 신수도 마스터플랜* 등 기존 계획상 교통 부문 내용 및 K-City Network 1차년도 연구성과물 분석
 - * 현재 대외비 상태이며, 대외비 지속시 교통관련 타 정책/국가계획에 대한 분석 시행
 - 신수도 부지 및 인접 도시 현재 교통여건 파악
 - 신수도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검토
 - ITS 기반 신호시스템 및 교통 운영/관리체계 도입 위한 정책적/기술적 자문, 도입시 고려사항, 도입 로드맵 제언
 - 실시간 교통상황 반영 신호시스템 운영/관리전략 수립, 필요한 법·제도에 대한 자문
 -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 수립을 위한 장·단기 실행계획 수립
 - 선진 도시교통 운영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

- 신수도 전기차 대중교통 및 관련인프라 구축 기본구상
 - 신수도 배터리 기반 (BEV, Battery Electric Vehicle) 대중교통 도입 및 운영방안, 필요한 정책, 규제, 법·제도에 대한 자문
 - 충전시설 및 기타 전기차 관련인프라 소요 도출 및 구축 방안
 - 충전설비, 전력공급, 제어 시스템, 운영구조, 요금 체계 등
 - 단계별 전기차 대중교통 및 관련인프라 구축 실행방안
 - 전기차 보급 가속화 방안 및 관련 제조업, IT업계 등 민간 부문의 전기차 생태계 조성방안

-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(자율주행, UAM, 연료전지) 사례분석 및 신수도 적용 검토
 -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제도 및 기술적 기반 마련
 - 자율주행 적합환경 도출 및 조성 계획
 - 차량, 중앙통제시스템, 도로상황 센서 등을 연결하는 자율주행용 사물인터넷·통신체계 구상

- 도심항공모빌리티(UAM) 기술/제도/법률 사례분석 및 신수도 적용방안 제언
- 수소 연료전지 모빌리티 기술/제도/법률 사례분석 및 신수도 적용방안 제언
- 기타 인간 중심의 차별화된 스마트 모빌리티 신수도 특화 아이디어 제언

[역량 강화]

- 주제별 양국 관련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을 제고
 - 한국의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, 교통연구원, 산업통상자원부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세종시, 한국도로공사, 현대자동차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교통·스마트시티·전기차·자율주행 관련 한국의 정책 및 실무경험 공유

[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]

-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,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

[경제협력 강화]

- 한-인니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가치 사슬(Value Chain) 공유 세미나 개최 및 네트워크 촉진, 매칭 가능한 기업 간 사절단 교류, 기술 이전 및 협력 촉진 방안 연구 등
- 양국간 투자 확대 및 주요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정부간 논의 확대
- 한국 기업-인니 현지 대학 간 산학협력 도입 및 확대

4. 과업의 일반원칙

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
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『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』, 『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』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

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
□ 기 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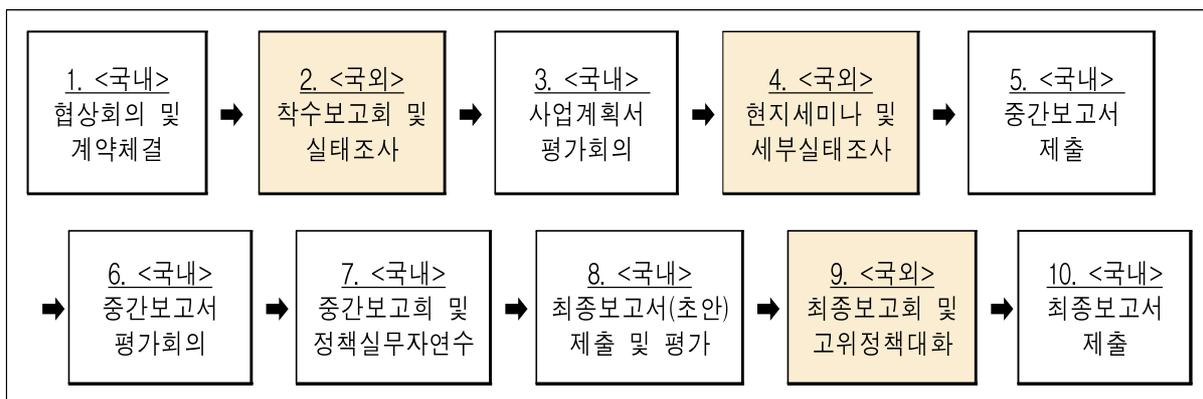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-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
- 국외출장 및 정책실무자연수 개최 시 출장자 및 연수 참가자가 여행자

보험을 가입토록 하고, 보상 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. 아울러, ‘국외 체류 시 안전매뉴얼’에 따라 안전지침, 위기상황대처 및 여행정보제도 안내를 통한 안전관리 자체 교육을 실시함

- 해당 사업의 특성상, 사업의 범위, 내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음
- 과업수행사의 연구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발주자와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, 용역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 후 발간하여야 함
- 과업내용(주요 결과물)은 발주자 및 협력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
- 연구책임자는 모든 현장 활동 및 우리 공사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, 전 과업범위에 대해 검토 및 감독을 이행해야 함

5. 과업수행 방법

<2021/22 EIPP 사업 단계>



※ 구체적인 일정은 실제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COVID-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추진방안 마련

□ 일반사항

-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(통합 실시),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(통합 실시),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(통합 실시),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 대화(통합 실시), 국내공유세미나* 등을 수행
*국내공유세미나는 사업종료 이후 KIND에서 주관하며, 요청시 사업수행 기관(연구진)은 동 세미나에서 연구결과물 발표를 수행
- 필요시 각 주제별로 주제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여 현지 컨설턴트로 활용하고 가능하면 공동연구로 추진
- 기타 모든 사업의 기획·집행·결과 공유 활동 등은 「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(기획재정부, 2019.10.2.)」에 따라 실시

□ 현지 실태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□ 월간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률을 작성하여 용역진도 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

6. 과업성과품 제출

□ 착수보고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 - 착수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(국문, 영문 보고PPT 준비)
 - * COVID-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 -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(착수계, 보안각서, 과업수행계획서 등)
- 금차 최종보고서
- 내용: 진행된 사업의 주제별 주요 진행경과를 포함, 협력국 현황 분석 작성
 - 사업진행 경과보고서(국문 5페이지 이상), 주제별 보고서(국문 10페이지) 각 1부
 - 제출방식 : 이메일
- 사업 단계별 활동계획보고서(국·영문)
- 내용 : 현지조사, 보고회(착수·중간·최종), 정책실무자연수 활동 계획 등
 - 기한 : 활동 착수일자 2주 전
 - 제출방식 : 이메일
- 사업 단계별 활동결과보고서(국문)
- 내용 : 현지조사, 보고회(착수·중간·최종), 정책실무자연수 활동 결과 등
 - 기한 : 활동 종료일자 2주 내
 - 제출방식 : 이메일
- 사업계획서(국문)
- 내용 : 확정된 과업 목표 및 범위, 사업 추진계획 및 보고계획
 - 기한 :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후 2주 내
 -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
- 중간보고
- 중간보고서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및 세부실래조사 및 연구시 확인한 주요

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- 기한 : 현지 중간보고서 평가회 개최 2주전
-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
- 중간보고회는 현지 수도이전 관계공무원 참석하 정책실무자연수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수행(국문, 영문보고 PPT 준비)
 - * COVID-19로 정책실무자 초청연수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- 계약 해당년도의 연구 진행 내용 등에 대해 금차최종보고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
-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(중간보고서)

□ 최종보고

- 최종보고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(200페이지 이하, 국문·영문)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국·영문 각 3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 - 필요시 인도네시아의 현행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는 요약본 별도작성 제출(국·영문·인니어 각 10부)
- 기한 : 최종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서 평가회 개최 3주 전 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제출
- 최종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(국문, 영문 보고PPT 준비)
 - * COVID-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- 제출방식: 공문 및 이메일, 인쇄본(최종보고서), USB 1세트(성과품 관련 모든 자료)

□ 사업종료보고서(국문)

- 내용 : 사업개요, 수행과정, 관리 및 사업성과 평가
- 기한 : 계약완료 후 영업일 20일 이내
- 제출방식: 공문 및 이메일

□ 수정보고서

- 사업계획서, 중간보고서, 최종보고서는 기재부 및 KIND내부위원 외 분야별 자문평가위원의 자문(또는 평가) 과정을 별도로 거치며 자문(또는 평가)의견에 따른 수정보고서 제출
- 제출방식: 이메일

※ 착수보고서, 사업계획서 외 보고서 제출기한, 보고서/USB 제출부수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발주처는 사업활동 점검을 위해 별도 보고서 제출 요청 가능

※ 점검회의 실시(최소 3회) : 1차 점검회의(성과품 : 사업계획서), 2차 점검회의(성과품 : 중간보고서 및 중간보고회 발표자료), 3차 점검회의(성과품 : 최종보고서 및 최종보고회 발표자료) 등

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

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